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재국 특성을 고려한 한국학교 운영 근거 마련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24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재국 특성에 맞는 교직원 연수 방안 마련 및 위임	2
2.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20.
3. 회 부 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서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한글학교와 같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5조).

Ⅲ. 검토의견

1. 소재국 특성을 고려한 한국학교 운영 근거 마련 및 위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한국학교 교원 및 직원의 연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①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신 설>	②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연수 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25조제2항에서 학교장이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한국학교 교직원의 연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이 주관하는 해당 연수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한국학교의 목적에 맞추어,¹⁾ 한국학교에 국내 교육과정을 안착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 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한국학교 교직원 연수 현황]

연수과정명	시수	시기	방법	인원	대상
교원 역량강화 연수	23	'25.7.	집합	66명	초·중등교원
행정직원 역량강화 연수	10	'25.10.	집합	30명	행정실장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연수	2	'25.3.	온라인	56명	중등교원
고교학점제 지원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관리·수업교사 나이스 연수	2	'25.6.	온라인	30명	중등교원
학교급별 나이스 사용자 교육	6	'25.4.	온라인	126명	초·중등교원
학교급별 학교 자율시간 연수	2	'25.12.	온라인	101명	초·중등교원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법 연수	2	'25.6.	온라인	12명	희망교원
나이스 현장 연수	10	'25.8.	현지방문(소주,무석)	46명	초·중등교원
	10	'25.11.	현지방문(동경)	25명	초등교원
교육과정 컨설팅	10	'25.5.	현지방문(프놈펜)	28명	교직원
	10	'25.10.	현지방문(엔타이)	60명	교직원

주: 2025년 실시된 연수 기준

자료: 교육부

□ 한국학교는 16개국에서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²⁾ 개정안은 학교장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한국학교별로 학교장 주관하에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한 연수를 실시하고, 한국학교 교직원의 해당 연수 이수를 통해 한국학교에서의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은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과정 등을 위해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재국의 특성을 고려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³⁾

2) 【참고자료 1】 재외한국학교 현황 참조

3) 「재외국민교육법」

제8조(교육과정) 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연수 방안은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학교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 특정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학교장 재량에 따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적용대상인 한국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제25조제3항에서 (제1항) 교육부장관이 주관하는 국내 연수기관 등에서의 한국학교 교직원 연수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제2항) 학교장이 주관하는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제1항)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주관하는 한국학교 교직원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교육부령에 규정될 경우, 법적 근거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부장관이 주관하는 국내 연수기관 등에서의 한국학교 교

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교육과정 등) ① 한국학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외의 교과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재외국민교육법」

제23조(교원의 자격)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직원 연수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는 현재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기본계획」, 「재외한국학교 나이스(NEIS) 시스템 운영 지원 계획」,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2항) 학교장이 주관하는 연수 방안은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교육부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을 감안한 연수 운영을 위해 연수 방법과 절차, 연수방안 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1항(교육부 연수)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제2항(학교 연수)은 학교장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① ----- ----- ----- ----- . 이 경우 교육 자료에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 다.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원 활한 교육을 위하여 제1항에 따 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신속히 보급하고 소재국의 상황 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제35조제1항에서 교육 자료에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를 신속히 보급하며 소재국의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현행법은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자료도 소재국이 사용하는 공용어(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와 문화, 제도 등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편찬·보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이 법률에 규정될 경우, 소재국의 특수성
이 반영된 교육 자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교과용 도서와 교
육 자료의 신속한 보급과 활용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35조제3항은 교육부장관을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
료의 보급 및 활용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교과
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신속히 보급하고, 학교장은 이를 소재국의
상황에 맞추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편찬·발행
과정에서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신속하게 보급해야 한다
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교과용 도서의 경우 국내 초·중등학
교의 교과용 도서 수요 조사와 보급 일정을 감안하여 재외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보급 시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적기에 보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 1

재외한국학교 현황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 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수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장	교감	계
동경한국학교	'62.03.16.		710(18)	348(9)	342(9)	1,400(36)		40	16	17	1	2	76
교토국제학교	'61.05.11.			29(3)	136(9)	165(12)			5	9	1	2	17
오사카금강학교	'61.02.24.		160(6)	68(3)	73(3)	301(12)		8	6	8	1	2	25
건국한국학교	'76.10.01.	55(4)	140(6)	55(3)	152(9)	402(22)	10	10	11	20	1	5	57
소계(4개교)		55(4)	1,010(30)	500(18)	703(30)	2,268(82)	10	58	38	54	4	11	175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27(2)	122(6)	144(6)	210(10)	503(24)	3	18	6	35	1		63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21(3)	119(7)	110(6)	117(6)	367(22)	4	18		32	1	1	56
상해한국학교	'99.07.06.		249(12)	275(11)	341(14)	865(37)		30	5	51	1	2	89
무석한국학교	'08.03.01.	38(3)	144(8)	137(6)	130(6)	449(23)	3	13		34	1	1	52
소주한국학교	'13.02.22.	16(1)	115(6)	120(6)	130(6)	381(19)	1	11	10	12	1		35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2(2)	61(6)	32(3)	24(3)	129(14)	4	11		12	1		28
엔타이한국국제학교	'02.09.01.		92(6)	82(3)	92(5)	266(14)		13	8	8	1		30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27(2)	231(10)	235(10)	228(10)	721(32)	3	20	20	21	1		65
웨이하이한국학교	'17.10.24.		136(6)	79(3)	92(3)	307(12)		13		17	1		31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8(1)	57(6)	44(3)	78(4)	187(14)	1	11	10	10	1		33
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46(6)	31(3)	30(3)	107(12)		10	7	8	1		26
연변한국국제학교	'98.02.19.	3(1)	34(6)	22(3)	24(3)	83(13)	1	9	5	6	1		22
광저우한국학교	'14.02.07.		127(6)	122(6)	144(6)	393(18)		13		27	1	1	42
소계(13개교)		152(15)	1,533(91)	1,433(69)	1,640(79)	4,758(254)	20	190	71	273	13	5	572
타이베이한국학교	'61.10.01.	13(1)	47(6)			60(7)	1	5			1		7
까오슝한국국제학교	'61.01.28.	9(1)	27(6)			36(7)	2	4			1		7
소계(2개교)		22(2)	74(12)			96(14)	3	9			2		14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6.03.21.		1,056(31)	642(18)	558(16)	2,256(65)		47	29	34	1	2	113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98.08.04.	41(2)	1,028(30)	500(15)	479(15)	2,048(62)	3	69	34	34	1	2	143
소계(2개교)		41(2)	2,084(61)	1,142(33)	1,037(31)	4,304(127)	3	116	63	68	2	4	256
젯다한국학교	'76.09.18.		11(4)			11(4)		2			1		3
리야드한국학교	'79.04.24.		15(2)			15(2)		2	1		1		4
소계(2개교)			26(6)			26(6)		4	1		2		7
지카르타한국국제학교	'77.04.25.		177(9)	237(9)	334(13)	748(31)		24	22	25	1	2	74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93.02.17.	28(3)	140(6)	64(3)	93(3)	325(15)	6	19	6	17	1	1	50
방콕한국국제학교	'02.02.18.		93(6)	38(3)	47(3)	178(12)		10	5	6	1	1	23
필리핀한국국제학교	'05.07.11.	22(2)	74(6)	45(3)	43(3)	184(14)	4	14	6	7	1	1	33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28(3)	43(6)			71(9)	2	6			1		9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28(4)	58(6)			86(10)	11	15			2		28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7(3)	35(6)			42(9)	1	6			1		8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4(2)			4(2)		2			1		3
카이로한국학교	'80.04.15.		26(6)			26(6)		6			1		7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12.12.28.	13(1)	55(6)			68(7)	1	6			1		8
프놈펜한국국제학교	'18.08.27.		57(6)	23(3)		80(9)		6	5		1		12
소계(11개교)		126(16)	762(65)	407(21)	517(22)	1,812(124)	25	114	44	55	12	5	255
합 계(16개국, 34개교)		396(39)	5,489(265)	3,482(141)	3,897(162)	13,264(607)	61	491	217	450	35	25	1,279

주: 2025.4.1. 기준

자료: 교육부